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69

발의연월일: 2024. 9. 23.

발 의 자:권영세·김소희·인요한

조승환 · 서일준 · 주호영

유영하 · 김도읍 · 김기웅

이인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주행자동차 제작・판매를 위한 레벨3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기준,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를 위한 성능인증제가 마련되고, 자율주행 버스 등 여객・화물 운송 서비스 실증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등 자율주행자 동차 상용화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 자율주행자동차는 새벽・심야노 선, 벽지노선 등 일반 운전자가 선호하지 않는 여객・화물 운송에 이 점이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여객・화물 운송 업계의 자율주행자동차 선호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현행 여객·화물 운송 사업의 경우 차량 내 운전자 탑승을 전제로 설정된 차량 안전관리, 운송 서비스 관리 등의 의무가 있어, 성능인증제 등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한 여객·화물 운송 사업 기반 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송 사업에 활용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여객·화물 운송사업자가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운송 사업을 할 경우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지정된 안전관리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규정된 운수종사자의 의무 등을 자율주행자동차의 특성에 맞게 준수하도록 규정하여 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등).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안전관리자"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조치, 비상상황 대응 등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전반의 안전성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9조의 제목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특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이하 "여객운송사업자"라 한다)는 제2조제2항제2호의 완전 자율주행자동 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려는 경우 각 차량별로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⑧ 제7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관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로 본다. 다만, 완전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와 특성 등에 비추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사자격, 준수사항, 휴식시간 및 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⑨ 부분 자율주행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여객운송사업자가 안전관리자를 지정한 경우 해당 안전관리자가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한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장의 규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의 제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이하 "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는 제2조제2항제2호의 완전 자율주행자동 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려는 경우 각 차량별로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관리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8호의 운수종사자로 본다. 다만, 완전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와 특성 등에 비추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사자격, 준수사항, 휴식시간 및 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④ 부분 자율주행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운송사업

자가 안전관리자를 지정한 경우 해당 안전관리자가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한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장의 규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	제2조(정의) ①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u><신 설></u>	12. "안전관리자"란 자율주행자
	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조치, 비상상황 대응 등 자율
	주행자동차 운행 전반의 안전
	성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	제9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
<u>례)</u> ① ~ ⑥ (생 략)	<u>법」의 특례)</u> ① ~ ⑥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⑦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이하 "여객운송사업자"라 한
	다)는 제2조제2항제2호의 완전
	자율주행자동차를 사용하여 여
	객을 운송하려는 경우 각 차량
	별로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야
	<u>한다.</u>
<u><신 설></u>	⑧ 제7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관
	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수
	종사자로 본다. 다만, 완전 자율

<신 설>

제10조<u>(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u> 한 특례) (생 략)

<신 설>

주행자동차의 구조와 특성 등에 비추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사자격, 준수사항, 휴식시간 및 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 다.

⑨ 부분 자율주행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여객운송 사업자가 안전관리자를 지정한 경우 해당 안전관리자가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한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장의 규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의 특례) ① (현행 제목 외 의 부분과 같음)

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이하 "화물운송사업자"라 한 다)는 제2조제2항제2호의 완전 자율주행자동차를 사용하여 화 <신 설>

<신 설>

물을 운송하려는 경우 각 차량 별로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관 리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 제2조제8호의 운수종사자 로 본다. 다만, 완전 자율주행자 동차의 구조와 특성 등에 비추 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 하지 하니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사자격, 준수사항, 휴식 시간 및 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부분 자율주행자동차를 사용 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운송 사업자가 안전관리자를 지정한 경우 해당 안전관리자가 수행하 는 업무와 관련한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장의 규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